

## 담배소매업 휴업·폐업신고서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	즉시
신고인	성명(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)	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	
	주소		전화번호	
	영업소 위치		상호(법인명)	
	사유			
	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기간			

「담배사업법」 제2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담배소매업의 [ ]휴업 [ ]폐업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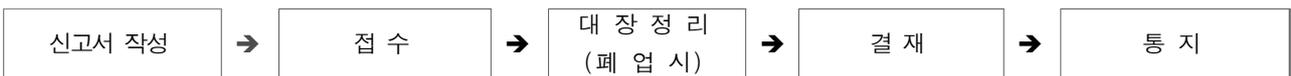
귀하

첨부서류	없음	수수료
		없음

### 참고사항

「담배사업법」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담배소매업의 폐업신고를 할 때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「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 이 경우 함께 제출된 폐업신고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됩니다.

### 처리절차



신고인

처리기관: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 담배업무 담당 부서